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케미칼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의 보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 3 조(구성)

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사외이사를 2 인 이상 포함하며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④ 제 2 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·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·의무가 있다.

제 4 조(위원장)

①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제 3 조 제 3 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 5 조(위원회의 권한)

① 위원회는 제 10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(개최)

위원회는 年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주일

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 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정하여 회일 전일 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(결의 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(의결사항)

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
2. 등기 이사의 개별 보수 승인 (성과급 포함)
3. 비등기 이사의 직급별 보수 한도
4. 등기이사 및 비등기 이사에 대한 특별 상여금의 지급

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 11 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2 조(통지 및 보고)

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결의일 다음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의사록의 작성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4 조(간사)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 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